

2017년 청년(대학 재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6.11.11]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사업대상지역 : 전국

2. 공급물량 : 총 6,000호 중 금회 3,358호(2,642호는 추후공고 예정)

지역	소계	금회공급 (재학생)		차회공급 (신입생,취업준비생)			지역	소계	금회공급 (재학생)		차회공급 (신입생,취업준비생)		
		단독	공동	수시	정시	취준생			단독	공동	수시	정시	취준생
서울	2,060	1,009	145	202	86	618	강원	115	57	8	12	6	32
인천	200	96	14	23	10	57	충북	115	57	8	12	6	32
경기	1,340	659	93	128	55	405	충남	340	166	24	33	15	102
부산	330	162	23	32	13	100	전북	230	114	16	21	9	70
대구	170	83	12	15	5	55	전남	70	33	5	8	4	20
광주	240	118	17	23	10	72	경북	260	128	18	26	10	78
대전	330	163	23	32	12	100	경남	170	83	12	17	8	50
울산	20	7	1	4	2	6	제주	10	3	1	2	1	3

* 17년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는 대학생으로 신청불가하며, 취업준비생 요건을 구비한 경우 차회 공급시 취업준비생으로 신청 가능

** 세종시 소재 대학의 경우 충남지역에 포함하여 물량 배정

*** '공동거주' 미달의 경우 해당 물량은 '단독거주' 물량으로 대체

3. 신청방법

【임대주택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본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http://apply.lh.or.kr>)→청약신청(주거복지)
<유의사항>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11)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2017년 복학예정자 포함, 2017년 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 제외)으로서 입주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 시·군 출신 대학생

타 시, 군 출신 인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 해당 가구는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하나에 의함
 - ▷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 ▷ 기혼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 ※ 단,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은 지원 가능
 - ※ 신청자가 혼인 후 이혼, 사별한 경우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주민등록 말소 포함)는 타 시, 군 출신 불문

대학교 인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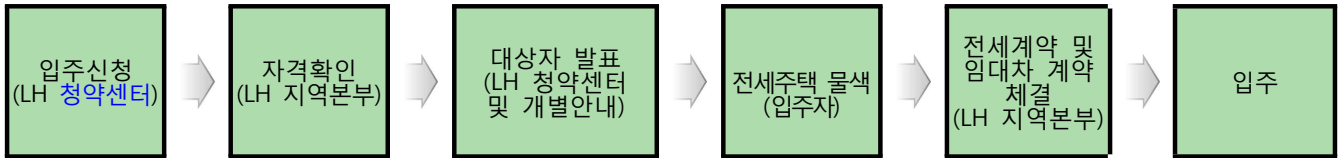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첨부 "지원가능 대학현황('16.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기준)"

5. 신청순위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가구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대학생	

6. 신청절차 및 일정

■ 신청절차



-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16.11.22(화) 10:00 ~ 11.24(목) 17:00 (3일간)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시작일 이후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신청마감일 17: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2. 마감일에는 신청접수가 일시에 몰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구비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람
3. 신청접수시 시스템 오작동 등으로 장시간 접수가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신청 마감시간을 일부 연장할 수 있음. 단, 공사에서 인정하여 사유 등을 청약센터에 게시한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첨부(pdf, jpg)하여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에서 신청

※ 첨부파일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시 제출 서류

- ※ 입주 신청시 첨부(신청서 접수시 스캔하여 첨부, 첨부용량은 파일 1개당 최대 500Kbyte로 제한)
- ※ 인터넷 신청시 입력 오류 및 첨부자료 누락 또는 식별불가 등의 경우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간 이후 변경할 수 없고 탈락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공동거주자 신청방법 : 1호의 주택에 "2인 이상 3인 이하"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동거주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

공동거주 신청시 유의사항

1. 미리 공동거주할 자를 정하여 신청함(가족이 아닌 경우는 동성(同性)에 한함)
2. 입주대상자 모두 상기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성거주자 모두 대학 소재지가 동일 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3. 기타 입주 유의사항은 "13. 기타 유의사항" 참고

■ 입주대상자 발표: '16.12.28(수) 16:00, LH 청약센터 게시(<https://apply.lh.or.kr>)

* 자격검색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거시 청약센터 별도 게시

- ※ 본부별 공급물량의 **1배수 내외를 입주자로 발표**하고, 입주자의 병역, 취업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약 3배수**를 예비자로 관리
- ※ 예비자는 추후 지역별로 LH 청약센터 등에 게시하고, 입주자의 주택물색 상황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하며, 선순위 입주자의 전세계약 체결 진행현황 등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SMS, e-mail, 청약센터 게시 등) 하고 **소명기한 부여**

신입생(편입생 포함), 취업준비생 모집 일정

1. 모집공고 : '16. 12. 8(목)
2. 신청기간 (수시합격자, 취업준비생) : '16.12.21(수) 10:00 ~ 12.23(금) 17:00
(정시합격자, 편입생) : '17. 2. 7(화) 10:00 ~ 2. 8(수) 17:00
3. 입주대상자 발표 (수시합격자, 취업준비생) : '17. 1. 24(화)
(정시합격자, 편입생) : '17. 2. 24(금)부터

※ 각 전형에 따른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함

■ 첨부서류(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되도록 발급**)

첨부서류[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6.11.11)이후 발급분에 한함]

첨부서류[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6.11.11)이후 발급분에 한함]		
공통	①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등)	- 등본상 부모 주소 분리시 분리된 부모 등본 추가 첨부 (국내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첨부) - 기혼자의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등본 추가 첨부(부모 등본 불필요) - 소득확인 대상자 중 임신중인 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 추가 첨부
	② 재학증명서	- '17년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첨부
해당 자에 한함	③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본인의 등본에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등재되지 않은 자는 반드시 발급(이혼포함) -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말소자초본 등 추가 제출
	④ 장애인등록증	- 2, 3 순위중 장애인가구는 첨부 * 신청자가 장애인인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됨
	⑤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첨부
	⑥ 아동복지시설 관련 서류	- 1순위 아동복지시설퇴소자에 한해 시설퇴소확인서 및 시설등록증 첨부
	⑦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신청자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

7.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80백만원/호	광역시 (세종시 포함) 60백만원/호	기타 도(道)지역 50백만원/호
--------------------------------	----------------------------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대상자 2인 이상 공동 거주시 200%) 이내로 제한함

■ 지원가능주택

- 재학중인 **대학 소재 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공동거주 지원 가능 면적은 2인(70㎡이하), 3인(85㎡이하)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8.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대상	선정기준								
1순위	경쟁시 추첨(LH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추첨)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2순위	<p>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LH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추첨)으로 선정</p> <p style="text-align: center;">[항목별 배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평가항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td> <td>3점</td> </tr> <tr> <td>②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td> <td>3점 2점 1점</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점수	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	3점	②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	3점 2점 1점		
평가항목	점수								
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	3점								
②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	3점 2점 1점								
3순위	<p>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p> <p style="text-align: center;">[항목별 배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평가항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td> <td>3점</td> </tr> <tr> <td>②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가정의 경우 12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가정의 경우 150% 이하)</td> <td>3점 1점</td> </tr> <tr> <td>③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td> <td>3점 2점 1점</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점수	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	3점	②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가정의 경우 12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가정의 경우 150% 이하)	3점 1점	③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	3점 2점 1점
평가항목	점수								
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	3점								
②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가정의 경우 12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가정의 경우 150% 이하)	3점 1점								
③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	3점 2점 1점								

대상	선정기준			
공통	□ 소득기준 금액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408,330원	2,696,570원	2,737,700원
	소득 70% 이하	3,371,660원	3,775,200원	3,832,780원
	소득 100% 이하	4,816,665원	5,393,154원	5,475,403원
	소득 120% 이하	5,779,990원	6,471,780원	6,570,480원
	소득 150% 이하	7,224,990원	8,089,730원	8,213,100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 기타 소득 산정 항목 등은 "2순위 자격 선정 대상"중 소득 설명 항목 참조				
□ 무주택 여부, 소득, 가구원수 선정은 아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신청자와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자,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9. 임대조건

■ 임대조건

- 기본임대조건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1순위 2순위	100만원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3순위	200만원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 보증금 지원 규모별 지원금리

구분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
1순위 2순위	연 1.0%	연1.5%	연2.0%
3순위	연 2.0%	연2.5%	연3.0%

- 순위별 거주형태별 임대조건 예시

전세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1순위, 2순위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000만원 - 100만원) \times 2\% \div 12] = 131,66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3순위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8,000만원 - 200만원) \times 3\% \div 12] = 195,00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전세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1순위, 2순위로서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175만원(기본 1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5,000만원 - 175만원) \times 1.5\% \div 12] = 60,31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3순위로서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00만원(기본 2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5%(연) ÷ 12개월]

$$= [(5,000만원 - 500만원) \times 2.5\% \div 12] = 93,75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10.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 3회까지 계약 가능하며(대학생이 졸업한 경우 재계약 불가)

11. 입주자격 확인방법

가.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LH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임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입주자격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여부

(시설퇴소자의 경우 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불가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가점항목 : 무주택 여부, 소득 확인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불가시

- 상기 안내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및 배점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로 “수급자 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소득확인 서류” 등 입주자격 확인을 위한 소명기한을 부여하고, 소명서류제출 기한내 해당 서류를 LH 청약센터에 등록

* 소명대상 안내 : '16. 12. 28(수) 16:00 이후 SMS 및 LH 청약센터 당첨자 발표를 통해 확인

* 소명기간 : '16. 12. 28(수) ~'17. 1. 10(화)

* 소명서류는 제출방법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안내

- 소명대상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람

12. 신청 부적격자

가. '17년도 대학 졸업예정자(수료생 포함)중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는 취업준비생으로 신청

나.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대상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다. 공공임대주택 등을 기지원 받고 있는 가구의 세대원 중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전입이 불가능한 경우 청년 전세임대 지원 제외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주 신청 관련 안내

○ 금회 공고시 중복 지원(신청접수)은 불가

○ 신청시 입력한 입주자격 및 가점으로 입주대상자와 예비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예비자에 한해 자격 검색("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회) 후 최종 입주대상자와 예비자를 선정

※ 인터넷 신청내역 입력 오류 및 첨부자료 누락 또는 식별불가 등의 경우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간 이후 변경할 수 없고 탈락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나. 주택물색 관련 안내

○ 대학 소재 시도내 지역 및 대학 연접 시·군 주택 물색 가능

* 단, 부모(세대분리된 경우 부, 모 모두) 주소 소재 시, 군에는 물색 불가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됨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당첨시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시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 재안내 예정

○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선지급함(단,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공무원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전입 불가

- 병역 또는 장기 휴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계약 전 주택소유자 및 LH 지역본부와 협의 후 전세계약 기간을 조정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함. 계약도중 장기 거주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는 주택소유자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이주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할 경우 발생하는 임대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다.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 제도 안내

- 19세 미만인자(대학원 석사 이하 재학생으로 19세 이상 미혼 자녀도 포함)가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는 추가증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기존처럼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관련 문의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라. 기타

-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추후 공사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청년이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주택을 계속 공급 (단, 대학생은 복학시 계속 공급 가능)
- **대학생이 졸업한** 경우 재계약 불가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일 전까지 대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최초 계약 불가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신청자와 배우자]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 기타 세부내용은 청약센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17년 대학생 전세임대 관련 Q&A 참조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준용
- 당첨자 발표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도 달라질 수 있음

14. 입주신청 이후 제출 서류

가. 복학예정 확약 각서 등 (계약요청 전 해당 LH 지역본부로 제출)

- 복학예정자는 `17년 복학예정 확약 각서(공사 소정 양식)를 제출하며, 복학 후 즉시 재학증명서를 제출. [`17년내 복학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나. 기타 추가 제출

- 입주신청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출 서류 등을 통해 확인 불가시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내 서류 미제출시 입주대상에서 제외함

15.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구분	연락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www.lh.or.kr)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http://jeonse.lh.or.kr)

2016.11.11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연락처
서울본부 전세임대2부	서울 경기북부(가평, 구리,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02)3416-3506
경기본부 전세임대부	경기남부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번길 3	1661-8415
인천본부 전세임대부	인천 경기서부(고양,김포, 광명, 부천, 고양, 파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032)890-5470 5460
부산울산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부산, 울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051)460-5523~5528
대구경북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053)603-2800
광주전남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062)360-3266,3267
대전충남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대전, 세종, 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042)470-0700
강원본부 주거복지사업부	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033)258-4131,4127
충북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39, 청주타워 7층	043)220-8886, 8899
전북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063)230-6182,6214,6357
경남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1800-0553
제주본부 주거복지사업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064)720-1034, 1036

1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 만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